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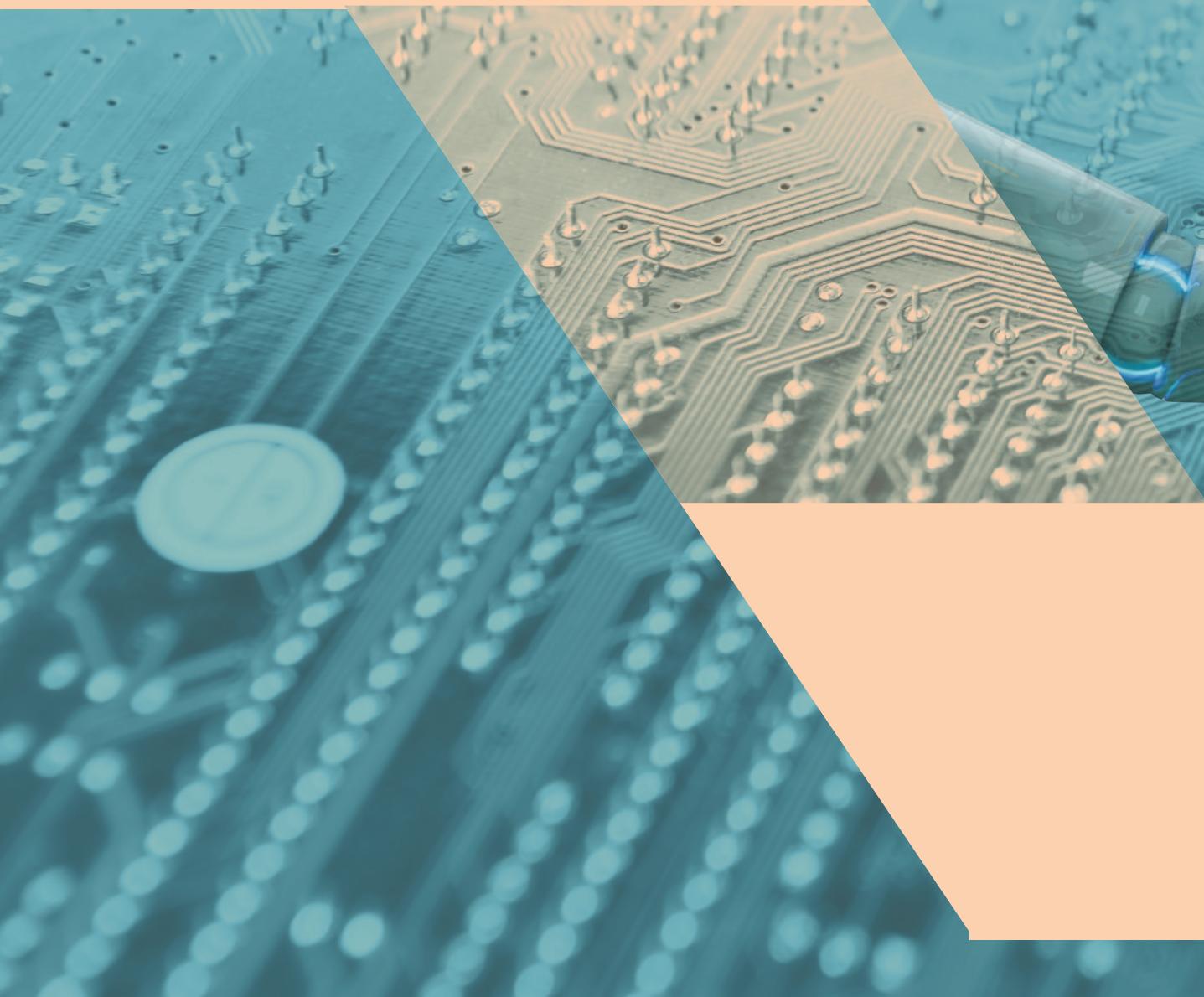
www.nipa.kr

20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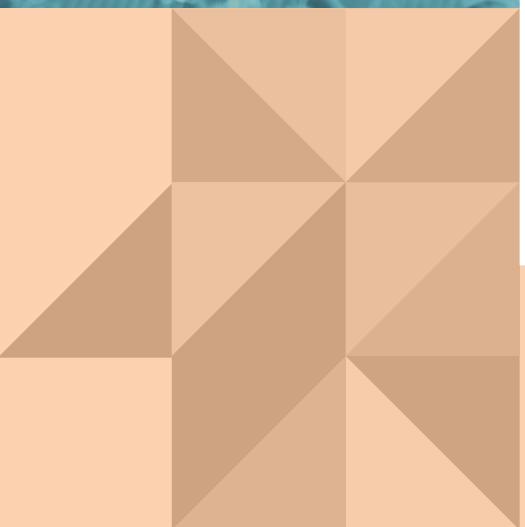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Contents



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6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10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3
1. 평가 기준	14
2. 평가 방법	15
3. 평가 시기 및 절차	17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19
1. 평가단계 및 활동	20
2. 단계별 세부 내용	22
1단계. 기본정보	22
2단계. 운영계획	26
3단계.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28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30
5단계. 종합의견 작성	33
불임	3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36
2.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39
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47
부록	53
질의 및 응답(Q&A)	54



개정이력

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 개요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도입 배경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위축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 법적 근거(붙임 1 참조)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대상기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 * 그 밖의 정보화 사업은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전체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되어도 대상사업으로 간주함.

** 단,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 배포·서비스 제공 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공개 제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12조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제2호 및 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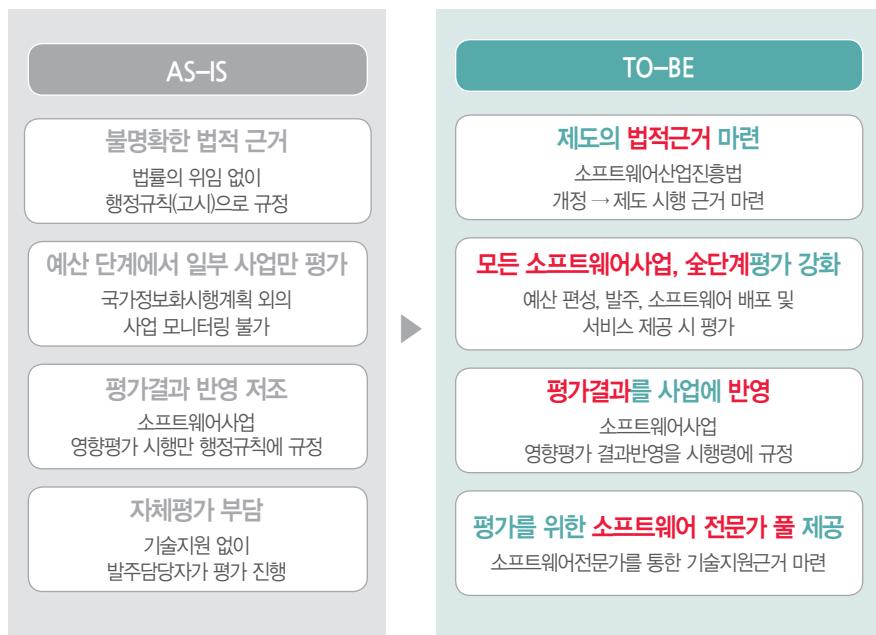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 추진경과 ■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도입방안 검토(『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14.7월)
-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반영, '15.5월)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시행근거 마련(『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6.6월)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의무실시 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 신설, '18.2월)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시행 절차 마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신설, '18.7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 신설, '18.8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전후 비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개요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목표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예방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공공과 민간의
종복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 방지

| 사업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기획 사업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등 기획 사업 수립 시 사업의 주요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사전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재검토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발주·서비스 전,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사전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재검토

운영·유지보수 사업

- 기능 추가 시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재검토
- 기존 서비스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 또는 사업 중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본 체계 |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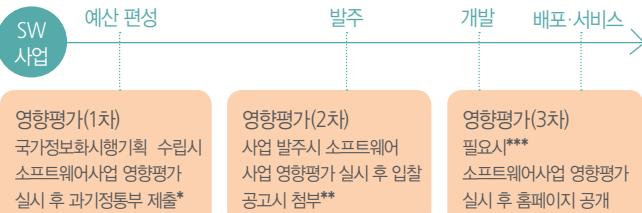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 공공성

평가 방법

국가기관등 자체평가

* 요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지원 제공

평가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 및 기재부에 조정 요청 → 기획재정부는 조정요청 의견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사전규격과 (본)공고에 첨부하여 공개

*** 국가기관등이 자체 개발 또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 평가 기준
2. 평가 방법
3. 평가 시기 및 절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1.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기능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기능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공공성
 - 법령에 의한 사업, 외교 및 국방 분야, 민간 서비스 활성화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필요성)과 공공성을 정성평가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평가결과 ■

구 분	내 용
민간시장 침해 없음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없어 사업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경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필요

*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함.



2. 평가 방법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급 판정

평가등급 평가기준		민간시장 침해 없음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사업재검토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	○	○
	없음	○	-	-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높음	-	○	-
	낮음	-	-	○
사업추진 (검토결과서 작성)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2. 평가 방법

◎ (자체평가) 국가기관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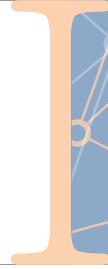
-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소프트웨어 전문가 포함)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가능

◎ (기술지원)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 제공*,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가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수당 지침(운영요령)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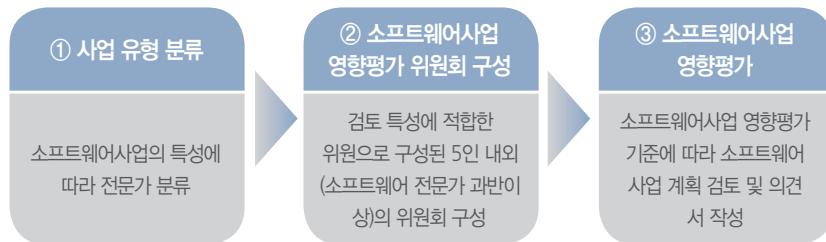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외부전문가 활용 사례

▣ 구성 및 역할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5인 내외의 전문가(소프트웨어 전문가 과반이상)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 의견서* 작성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 위원(소프트웨어 전문가) 자격요건 예시 〉

구 분	자 격
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프트웨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해당분야 재직 중인 사람)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프트웨어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검토결과서 작성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
- 위원별 의견이 나누는 경우 평가등급*은 위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동수를 이룰 경우 위원장이 결정)
 - * “민간시장 침해 없음”,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사업재검토”
 - ** “사업재검토”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3. 평가 시기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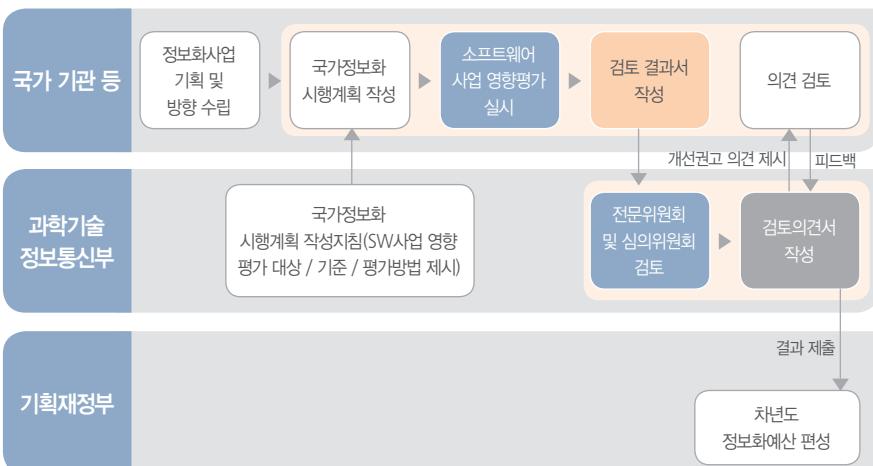
3. 평가 시기 및 절차

■ (예산편성)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 국가기관들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국가정보화시행계획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등이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점검·분석*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10인 내외) 및 심의위원(15인 내외)을 통해 검토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 (발주) 입찰공고

- 국가기관등은 발주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의 사전규격 및 본공고에 첨부하여 공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 (그 외 필요시)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

- 국가기관등이 자체 개발 또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한 후 국가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III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1. 평가단계 및 활동
2. 단계별 세부 내용
 - 1단계. 기본정보
 - 2단계. 운영계획
 - 3단계.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 5단계. 종합의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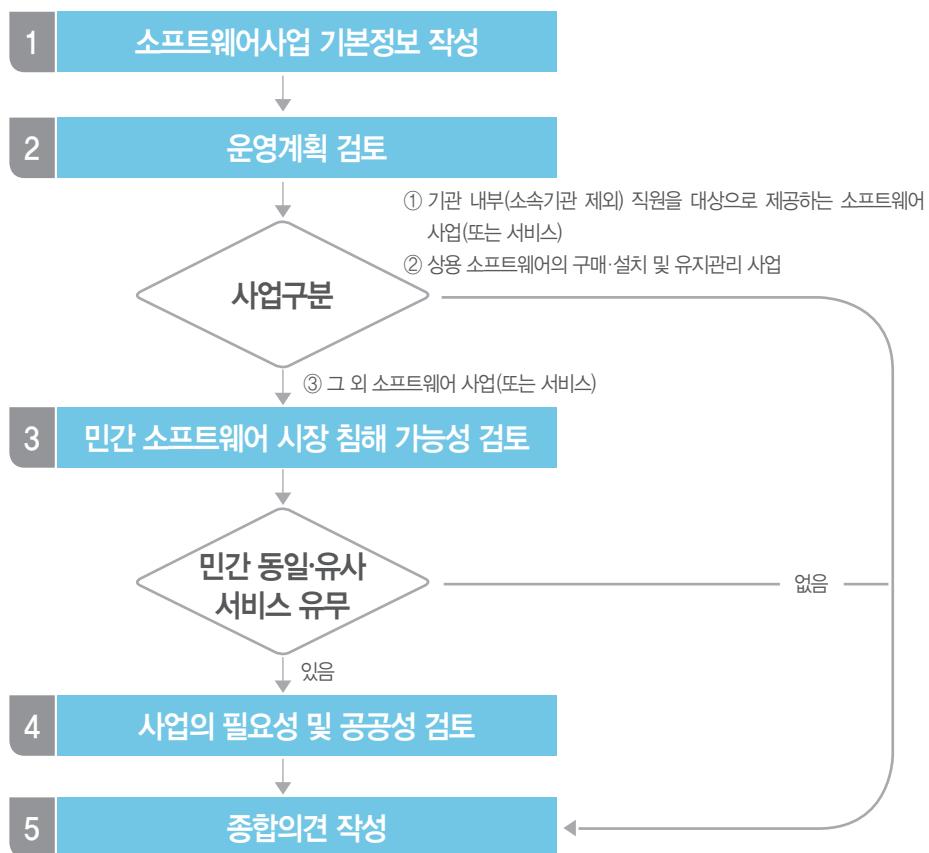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III

1. 평가단계 및 활동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 ■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은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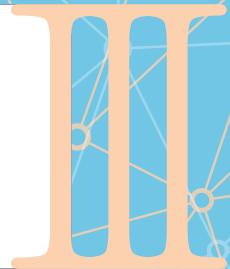
1. 평가단계 및 활동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주요 활동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와 각 단계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단계	설명	참고자료
소프트웨어사업 기본정보 작성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로 사업기본정보(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영향평가 단계, 사업 구분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추진계획서제안요청서사업완료보고서(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시 해당)
운영계획 검토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추진계획서운영계획안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추진계획서기능 요구사항제안요청서민간 소프트웨어 현황정보 검색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검토	소프트웨어사업의 서비스 또는 일부 기능이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서비스 규정 관련 법령국가안보 점검 기준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종합의견 작성	각 단계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단계별 검토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2.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기본정보

■ 기본정보 개요 ■

◎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이다.

◎ 기본정보 작성 양식

1. 기본정보	사업명(또는 서비스명)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기간(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기본정보 작성 항목 ■

◎ 기본정보 작성은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항목을 작성한다.

• 사업명(또는 서비스명)

-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을 작성한다. 예산 편성 또는 발주단계에서는 추진 사업명으로 입력한다.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제공 시점에는 대상 서비스 또는 시스템명이 확정 되면 해당 명칭으로 작성한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 영향평가 단계

- 영향평가 실시 시점은 예산편성 단계, 사업발주 단계,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제공** 단계 등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계	설명
예산 편성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인 경우 선택한다.
사업 발주	예산 확보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주 단계인 경우 선택한다.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개시, 운영 이행 등 사업 종료·운영 시점에 선택한다.

- 주요사업 내용

- 검토 대상 사업의 성격과 제공 서비스(또는 기능)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한다.

- 사업기간

-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사업기간을 입력한다.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입력한다.

- 사업구분

- 사업구분은 기본정보 입력 이후 민간침해여부, 공공성 및 필요성 검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대상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 ① 기관 내부 직원(소속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단일 기관(소속기관 제외)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용 대상과 범위가 민간시장 침해와 관련성이 낮은 경우

-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 또는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검토결과서 『3단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항목 작성 불필요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민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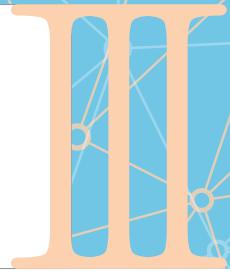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설치시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검토결과서 『3단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항목 작성 불필요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위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경우 반드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을 검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소프트웨어사업 기본정보 작성 예시 ■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정보포털시스템(00일자리 채용 및 취업지원 구축)	
	영향평가 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00채용정보 상시제공• (주요콘텐츠) 분야별 채용정보, 00종사자 자격 및 자격시험안내, 취업성공포인트 소개, 일자리 통계, 00분야 진로 탐색 등	
		구분	콘텐츠
		채용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구분별 월별 채용정보 제공 AA / BB / CC / DD / EE / FF / 사무직 등
		00 자격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의 모든 것 / 취업성공포인트 전문교육기관 / 자격시험 안내
		일자리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 구직, 취업현황 통계정보 제공 * 통계자료 수집 및 집계 방안 등은 일자리위원회와 보조
		00분야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사업체 / 00관련업체 / 00운영자 / 정부산 하기관 / 국제기관 / 학교·학원·연구소– 연락처 및 채용안내사이트 링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9년 3월 ~ 2019년 6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단계별 세부 내용

■ 유의사항 ■

-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 정보를 작성한다.
- ◎ 주요 사업 내용의 경우 대상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사업구분의 경우 기본정보 및 운영계획 이후 검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III

2단계 운영계획

■ 운영계획 개요 ■

-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하는 단계이다.
- 운영계획 작성 양식

2. 운영계획	운영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 운영계획 작성 항목 ■

- 운영계획은 사업추진 계획서, 운영 방안 등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운영 방안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운영 기관
 - 평가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종료 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다수 기관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택하고 예상하는 기관의 수를 입력한다.
 - 사용자(복수 선택 가능)
 - 대상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만약 일반 국민 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예상하는 사용자 수 또는 기업의 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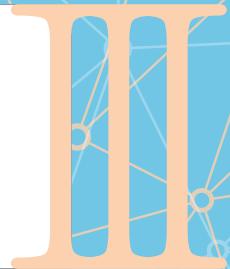
■ 운영 계획 작성 예시 ■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10개 기관)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 유의사항 ■

- 대상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운영 방안은 민간 시장 침해 여부 판단의 주요한 요소로 유사 서비스가 포함된 내용을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되면 심각한 민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
- 예상 기관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공동 운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일반 국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예상인원 또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3단계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개요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서비스 제공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양식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항목

- 동 사업의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를 작성한다.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민간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음 / 없음을 선택한다.
 - 있음을 선택하였을 경우 개발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기재하고,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명, 업체명, 기능을 기재한다.

유사서비스 확인 방법

정부기관 모바일앱(www.gov.kr/portal/mobileApp),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씨앗마켓(www.ceart.kr), 패키지SW솔루션맵(www.spir.kr), GS인증 제품정보(www.swit.or.kr), SW특허정보(www.kipo.go.kr),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네이버, 올레, 티스토어) 등을 활용

2. 단계별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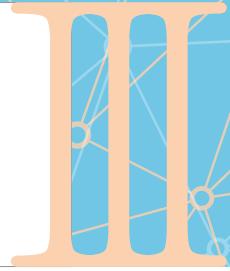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확인 작성 예시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평가자 서비스 : 00평가	00제품(00사)의 00기능
	• 00업무서비스 : 평가지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 평가 진행	00제품(00사)의 00기능
	• 00행정 서비스 : 평가 기준 및 결과 관리	00제품(00사)의 00기능

■ 유의사항 ■

-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을 작성한다.
- ◎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의 개발·배포시 심각한 민간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민간 침해 가능성 검토해야 한다.
-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
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
는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4단계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

-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양식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외교 / 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항목 ■

-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는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공공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국가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기능과 서비스를 규정한 해당 관련 법령을 기술한다.
 - 외교와 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외교와 국방 분야에 대해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한 사유를 작성한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외교/국방 사업(예시)

① 외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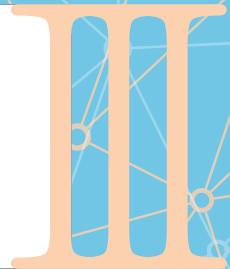
-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② 국방 사업

-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축하고자하는 서비스가 정비 모델인지 정비대상 검토 제외인지 확인한다.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방안을 작성한다.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위의 사유 외에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작성 예시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외교 / 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본 사업은 자체등급분류 0000 연계 체계 고도화를 통한 0000 사후관리안전망 강화, 다원화된 0000 등급분류 정보 접근 창구의 단 일화를 통한 정보 가용성 제고, 글로벌사업자 간 데이터 연계체계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보와 등급분류의 정보화 및 자율성 확대를 통 한 00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함이기에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

■ 유의사항 ■

- ◎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하여 작성한다.
-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 ◎ 「1단계 기본정보 -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
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
는다.



2. 단계별 세부 내용

5단계 종합의견 작성

■ 종합의견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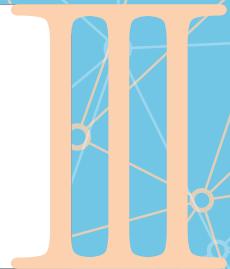
- ◎ 1단계에서 4단계의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 ◎ 종합의견 작성 양식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 종합의견 작성 항목 ■

- ◎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3단계의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을 작성하지 않거나, 없음으로 작성한 경우에 선택한다.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 3단계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으로 작성한 경우에 선택한다.
 -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후 조치방안을 작성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방법



■ 종합의견 작성 예시 ■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방안 : 00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자설계 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되, 00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 유의사항 ■

- ◎ 3단계와 4단계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택한다.
-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을 충실히 작성한다.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2.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붙임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관련 법령 (법률-시행령-고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p>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p> <p>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p> <p>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령	<p>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p> <p>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p> <p>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p>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p> <p>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체·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 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구분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년 월 ~ 20년 월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구분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구 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 기능			
동일 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0			
0			
0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붙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붙임2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모바일00 운영 및 유지관리	
	영향평가 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 모바일00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한 00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콘텐츠 상시 제작 및 운영 – 모바일00 서비스(웹·앱) 기능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 – 주요 행사·모집시 모바일 신청 운영 – 대표 유무선 통합개편 사업 지원 및 업무 협조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1~5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약 1,000,0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붙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_____)<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_____)<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_____)<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_____)
5. 종합의견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기관장 직인 생략 가능

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영향평가 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정보/경영자정보 유자관리 및 기능 개선• 그룹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취약점 개선, 관련교육, 기술지원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 (예상 : 1~5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직원	300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 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불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_____)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_____)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_____)
5. 종합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_____)
<p>※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기관장 직인 생략 가능</p> <p>년 00월 00일</p> <p>기관장 0 0 0 (직인)</p>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0 플랫폼 구축 ISP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인증서 공동(통합)인증 플랫폼 구축 전략계획• 글로벌 000 신청자 인증체계 마련• 000인증서 발급체계 구축 전략계획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불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5. 종합의견	
	201x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구청 홈페이지 개편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표 및 개별별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재구성외국어(영문·일문·중문) 홈페이지 및 읍·면·동 개별 홈페이지 개편콘텐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시스템(CMS) 도입웹 표준(접근성, 호환성, 개발보안) 준수 및 관련 인증마크 획득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불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5. 종합의견	

201x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붙임3

검토결과서 작성 예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정보서비스(00관리서비스 표준화)		
	영향평가 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00개 00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7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1,000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A회사(P솔루션), B회사(I솔루션) 등 00 과제관리 및 00 기능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재설계(BPR) 및 통합 시스템 상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 규정·지침·매뉴얼 및 업무절차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 관리 데이터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비			

붙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법령명 :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 동 법 시행령 제40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유사정보 중복입력, 규정·절차·서식 상이에 따른 혼란, 관리자 중심 서비스, 00관리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 등에 따른 00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00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및 업무자설계 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되, 00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p>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기관장 직인 생략 가능

201x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영향평가 단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응용서비스 유지관리활용데이터 개방 데이터 관련 지원실시간 장애처리 복구 지원 및 기술지원서비스인프라 유지관리 : 시스템 최적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데이터 최신화 및 데이터 확대 적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u>소프트웨어</u>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u>소프트웨어</u> 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u>소프트웨어</u>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5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600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00신호등, 맞춤형00분석	00공단 00지수, 00분석	
	맞춤형00분석	A사 00분석서비스	

붙임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법령명 :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 동 법 시행령 제40조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계 구축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00별 00자수지표, 00 영역, 00별 00지표 정보 등을 데이터, 파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여 민간에서도 서비스 시장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p>
5. 종합의견	<p><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00분석서비스의 특성상 00가 보유중인 00관련 정보를 활용한 00성공을 향상을 위한 00분석의 공공성이 있으나, 타 공공기관의 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와 중복된 기능을 제거하여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p>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기관장 직인 생략 가능

201x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00 구축운영							
	영향평가 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판독체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00 구축 - 빅데이터 체계 구축 - 00조사 회계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 체험형 VR 교육시스템 - 000 정보제공시스템 - 모바일 000시스템 구축 - 000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x년 0월 ~ 201x년 0월							
	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0px;"><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r> </table> <p style="margin-top: 5px;">※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p>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10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직원	300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2,000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기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000 인식도구		A사 00 인식도구 B사 A솔루션 C사 M솔루션						

불임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민간 솔루션을 구매하여 활용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000 인식도구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민간솔루션을 도입하여 민간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

201x년 00월 00일

기관장 0 0 0 (직인)



부록

질의 및 응답(Q&A)

부록

질의 및 응답 (Q&A)

Q0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향평가 준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Q0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운영·유지관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Q0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Q0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0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Q06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있습니까?
Q07	공공기관의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입니까?
Q0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시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입니까?
Q09	소프트웨어 공동사용 장려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Q10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Q11	공공기관이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Q1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Q13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로 볼 수 있나요?
Q14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확산하는 연차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될까요?
Q15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미미하게 포함된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Q0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향평가 준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체계, 수행 절차, 양식, 평가 예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위치: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wit.or.kr>)
(홈페이지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SW영향평가)

Q0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운영·유지관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운영·유지관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전산장비유지관리, 운영위탁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전산장비(HW, SW) 유지관리, 단순 인건비 기준의 운영인력 운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구성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운영)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합니다.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히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 (용역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 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합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 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합니다. 즉, 공공SW사업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본질적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무상의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유상의 개념이므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 앞에 유상·무상의 단어를 병행하여 표기하지 않습니다.

Q0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 그 밖의 정보화 사업은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전체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되어도 대상사업으로 간주함.
-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제2호 및 제3호)

* 단, 인프라(하드웨어 등) 도입, 인력운영(인건비), 통신비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Q0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사업이 상당하다는 소프트웨어산업계 자체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보호·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평가하여, 민간과 공공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0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의 사업부서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자체 실시 후 결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예산편성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결과서 제출
- 발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 : 필요시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Q06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 풀을 제공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Q07

공공기관의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국가기관 등의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서를 간소하게 작성합니다.

*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Q0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시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입니까?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결과서 작성 시 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SW산업 피급효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09

SW공동사용 장려와 SW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공성이 높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결과물의 무상배포를 최소화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Q10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전수조사가 어렵더라도 민간서비스와 유사중복 여부를 조사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Q11

공공기관이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검토결과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체 영향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발주 및 이후 단계에서 검토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합니다.

- 공개된 검토결과서가 잘못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12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간시장 침해 없음) 사업 추진 가능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민간과의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능
- (사업재검토)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Q13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나, 소프트웨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개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민간에 존재하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SaaS형태로 무상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에 해당됩니다.



Q14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확산하는 연차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될까요?



이미 구축한 시스템이라도 연차사업 개발내용 중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Q15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미미하게 포함된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시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권고여부를 검토합니다.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Help-desk : 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URL : www.nipa.kr Tel : 043-931-5362